

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6. 25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6. 25.

(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김 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화순군의 각종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, 타당성 등 사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 제1, 2, 3, 4, 5항)
 - 용역 :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조사, 구매, 조달, 시험, 감리, 시운전, 자문, 지도,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함.
 - 학술용역 :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.
 - 종합기술용역 : 항만, 해운, 도로, 공항, 철도, 하천, 수력, 상·하수도, 관개,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.
 - 공사설계용역 : 건설, 전기,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.
 - 사업집행용역 :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.

○ 위원회 구성 (안 제3조 제1, 2, 3항)
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, 환경과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,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○ 위원회의 기능 (안 제5조 제1, 2, 3, 4항)

-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 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
 -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
 -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의견 청취 (안 제9조)

-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 영 순)

-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사무 증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,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,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
- 그동안 각종 용역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본 제정안은 법규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수정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3명,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 (구성) ① 생략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<u>문화관광과장, 환경과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</u>이 되고 위촉위원은 <u>군의회 의원 2명, 각 분야 전문가</u>,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	<p>제3조 (구성) (현행과 같음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감사실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</u>이 되고 위촉위원은 <u>군의회 의원 3명, 각 분야 전문가</u>,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